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년 9월15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8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9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9.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과장 김병옥)

□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“기계시설”, “전기시설”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직류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제1항, 제46조제1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　　의 : 해당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입법예고(2020.6.3.~ 6.23) 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
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 : 해당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가. 제정 취지

○ 현장에서 근무중인 관리운영직의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, 대체 직렬의 현장업무 수행 적합도가 낮아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직류 신설을 통해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“기계시설” 및 “전기시설”로 규정함 (안 제3조 및 * 별표 1)

○ 조례로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명시함(안 제4조 및 * 별표 2)

* 별표 1,2 : 붙임 1 참고

※ **직군 · 직렬 · 직류의 개념**(지방공무원법 제5조)

- 직군 :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함
- 직렬 :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,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하며,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됨.
- 직류 :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하며,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렬을 보다 세분화한 개념이며, 임용자격, 시험 기타 인사행정이나 직위분류의 기초가 됨

다. 종합 의견

○ 2013년 직종개편 이후 현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관리 직류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어 전문성 있는 현장전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

○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개정되었고, 서울시에서도 시설관리 직렬 내에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“기계시설”, “전기시설”의 세부 직류를 신설하였으며

○ 이에 본 조례안은 해당 분야의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조례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1. 별표 2부
2. 관계 법령 1부

참고 1 별표 1, 2

〔 별표 1 〕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에 적용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(제3조 관련)

직 군	직 렬	직 류	계 급								
		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술 직군	시설 관리	기계 시설					지방 시설관리 사무관	지방 시설관리 주사	지방 시설관리 주사보	지방 시설관리 서기	지방 시설관리 서기보
		전기 시설									

〔 별표 2 〕

신설하는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표(제4조 관련)

계급	시험과목		직렬	시설관리	
			직류	기계시설	전기시설
6급 및 7급	공개경쟁 임 용	제1차	필수	국어, 한국사, 사회	국어, 한국사, 사회
		제2차	필수	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	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
	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·전직·승진	제1차	필수	물리	물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, 기계설계	전기이론, 전기기기
8급 및 9급	공개경쟁 임 용	제1차	필수	국어, 한국사	국어, 한국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	전기이론
	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·전직·승진	제1차	필수	한국사	한국사
		제2차	필수	기계일반	전기이론

참고 2 관계 법령

❏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조(공무원의 직급구분 등)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·직렬·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.

제46조(시험과목)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1. 공개경쟁임용시험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
   가.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
   나.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
2. 경력경쟁임용시험: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